

#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1. 의결주문

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- 「형사소송법」(법률 제16924호, 2020. 2. 4. 개정, 2022. 1. 1. 시행) 제312조 제1항이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진술할 경우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당해 조서 중 피고인이 진술한 부분과 같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(제134조 제3항)

## 3.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#### 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4조제3항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134조(증거결정의 절차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<u>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 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 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진 술할 경우,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은 당해 조서 중 피고인이 진술 한 부분과 같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34조(증거결정의 절차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579